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mprovements on the Related Laws of Renewable Energ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장진숙*
Chang, Jin-Sook

목 차

- I. 서론
- II.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개념과 철학
- II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의
운영실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 IV.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관한 개선방안
- VI. 결론

국문초록

21세기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가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논문접수일 : 2019.10.31.

심사완료일 : 2019.11.20.

게재확정일 : 2019.11.20.

* 법학박사·글로벌 과학기술법 연구소 선임연구원,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가치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한 절차적 법적요건이 비단 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법적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철학에 관한 고찰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적장치를 함께 도출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을 간략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국제경제지역협정들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조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제시된 기존 절차적 요건의 재강조 및 개선점을 고찰한다.

주제어 : 지속가능한 개발, 재생에너지, 투명성,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 「추출산업투명성협정」, 한국 유럽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조향,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점점 더 중요한 21세기 국가의 산업기반 시스템

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의 저변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각과 반성이 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관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직면한 당면과제로서 내실 있고 견고한 한국경제성장의 기반을 장기적인 계획의 토대위에서 다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 기술 구축과 이를 위한 관련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기존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일이다. 그것은 바로 재생에너지 법이 아직도 현실주의의 이론이 국제관계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내포한 철학적 가치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절차적 법적요건이 비단 재생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21세기 국가의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법적도양이라는 것에 대한 재강조이다. 이러한 고찰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갖는 큰 중요성과 실질적 실천방안에 대한 보완점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철학에 관한 고찰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적장치를 함께 도출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을 간략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국제경제지역협정들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조항’을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제시된 기존 절차적 요건의 재강조 및 개선점을 고

찰한다.

결국, 본 글은 변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한국정부가 빠르게 적응하여 이타적인 생존과 평화롭고·조화로운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의 장기적인 준비를 위한 연구이다.

II.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철학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지속가능한 개발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1987년에 정립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¹⁾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은 서로 모순된 언어로 서로 상치되는 언어의 합성어라고 비판받는다.²⁾ 게다가 ‘지속가능한 개발’은 선진국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개념이라는 비판도 있다.³⁾ 즉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 및 경제적 성장이라는 특정목적에 중점을 둔 개념인 것에 반해 ‘지속가능성’의 사전적 의미는 과정 및 상태를 유지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과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구별된다.⁴⁾ ‘지속가능성’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⁵⁾ 현재 ‘지속가능성’이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개발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립되었다.⁶⁾ 이렇게 국

1)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s Repor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 J. O'Neill, *Ecology, Policy and Politics: Human Well-Being and the Natural World*, Routledge, 1993, pp.1-2.

3) *ibid.*, p. 44.

4) *ibid.*, pp. 46-58.

5) M. Common,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New Jersey: Prentice Hall, 1988, p. 19.

6) M. Jacobs, *The Green Econom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제한경법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처음에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구호로 등장하여 지금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 이 의미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지속가능성’의 규범력은 국제법에서는 확립된 것이다.⁷⁾ 반면 개발은 IMF 국제금융기구에 의해서 국민총소득의 수입의 증가라는 경제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며 세계 각 나라의 개발유무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개발은 공적으로 경제성장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합쳐놓은 것만큼 ‘지속가능한 개발’은 사실상 현실화될 수 없는 원칙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정책적 비판이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해서 존재한다. 즉 현대 자본주의 환경에서 자원의 이용 및 향유가 아닌 자원의 재생이라는 방법에 기대는 자원의 재생적 활용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한다는 정책에는 내재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⁸⁾ 이런 비판은 실질적으로 권력과 부의 큰 재분배가 없는 한 심각한 환경적 손상을 피하면서 ‘재생’에 기반을 둔 개발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⁹⁾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권력조직에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한다.¹⁰⁾

그런데 현재 국제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발에 관한 새로운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구분을 ‘경제적 수입’으로만 결정할 수 없기에 ‘개발’은 다차적 차원의 성격을 띤 개념이라는 것이다.¹¹⁾ 따라서 개발은 정부구조, 인간발전, 민주적 참여의 향상된 거버넌스, 환경적 지속가능성등 다방적 측면에서 각각 따로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개발과 선진국의 기

London: Pluto Press, 1991, p. XV.

7) *ibid.*, p. 3.

8) Rajendra Ramilogan, *Legal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 Judicial Interpret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 24.

9) *ibid.*

10) *ibid.*

11) Sergio Taeazos Vazquez & Andy Sumer, “Revisiting the Meaning of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Tax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49 No. 12, 2013, p. 1728.

준을 경제적 수입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수입이외에 개발의 다층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다차적 차원의 개발에 관한 개념에 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점은 바로 개발은 국민총소득 GDP의 향상과 정부구조, 민주적 참여의 거버넌스,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의 개념에 의하면 국민총소득의 경제적 수입을 올리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다. 이러한 경제적 총수입이 시민들의 성숙한 도덕성을 위한 향상된 정부제도, 민주주의, 환경 및 인권보호와 같은 전반적인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른 분야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게 쓰여 지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향상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 개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의 다차원적 정의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결국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향상과 인간성의 도덕적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 개발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다차적 차원의 ‘개발’의 개념은 ‘지속가능성’과 상치되지 않고 서로 보조적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국민 총소득의 증가 및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측면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획득된 경제적인 부가 인간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다양한 분야의 운영이 동시 다발적으로 또한 조화롭게 지속가능성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 나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철학

태초부터 인간은 자신과, 환경 그리고 환경과 자신의 관계에 관해서 규정하는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왔다.¹³⁾ 환경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철학적인 접근은 17세기 자연학파의 탄생을 그 분수령이다.¹⁴⁾ 그런데 17세기 계몽주

12) *ibid.*,

13) Rajendra Ramilogan, *op. cit.*, p. 1.

14) *ibid.*

의 시대 자연주의자 학파는 자연을 자연이 보유한 고유한 권리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았지 자연을 신에 의해 인간에게 그 처우가 맡겨진 존재로 자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즉 17세기 자연학파는 자연과 동물의 존재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했지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그 존재를 정의하지 않았다.¹⁵⁾ 이러한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관점은 그리스도교 성경적 해석인 ‘동물은 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그 처우가 맡겨진 종속된 존재’라는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 의문을 갖게 한다.¹⁶⁾ 물론 이러한 자연주의 학파의 생각은 자연의 유용성과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연에 대한 자비심의 덕성만을 생각한다고 비판 받는다.¹⁷⁾

이후 Mary Somerville라는 학자는 자연에 대한 이미 인간의 무분별한 침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에 대한 통찰력 있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용은 동물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었다. 농부는 까마귀들이 자신의 곡식을 조금 먹은 것에 대해서 이웃주변의 모든 까마귀들을 독약으로 죽이지만 몇 년 후에는 자신의 곡식을 벌레들이 모두 먹어치운 것을 발견하게 되듯이 신의 창조물들은 좋게 균형이 맞추어져 있고 결국 인간의 그러한 신의 법을(균형을) 위반하지는 못한다.”¹⁸⁾ 이 의견은 인간이 생태계에 행하는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개입과 그 속 좁은 욕망과 욕심을 지적하는 것이다. 나중에 George Perkins Marsh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환점을 만들어 낸 인물로서 인간은 지구에 대해서 소비권이 아닌 용익권을 가질 뿐이고 주장했다.¹⁹⁾ 이러한 학자들은 오래전에 이미 자연환경보전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환경적 개입의 의미와 인간을 위한 남용을 인식하였기에 환경보존주의의 철학적 가치의 기

15) David Elliston Allen, *The Naturalist in Britain—A Social History*, London, 1994, pp. 1-3

16) 따라서 17세기 계몽주의 시대 자연주의자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을 자연이 보유한 고유한 권리안에서 자연을 바라보았지 자연을 신에 의해 인간에게 그 처우가 맡겨진 존재로 자연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분석에 대한 재고찰에서 부터 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무엇인가의 논의가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17) K. Thomas, *Man and the Natural World: Changing Attitudes in England 1500-1800*, London, pp. 90-91.

18) Rajendra Ramilogan, op. cit., p. 2.

19) G.P. Marsh, *Man and Nature*, Belknap press, p. 36.

반이 되었다.²⁰⁾

이러한 철학에 영향을 받은 어느 미국정부 공무원은 자연보존의 핵심은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으로 재생될 수 없는 자연과 자원을 고갈하는 것에 반대하여 모든 미국시민이 자연으로 얻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따라서 그는 맹목적인 무지함이 아닌 신중함, 선견지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질서 있는 그런 개발을 지향하여 현재세대가 필요한 자원의 완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또한 동등하게 후세대가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없애지 않게 우리의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²²⁾ 이러한 의견은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보편적 개념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즉 1970년 20세기 중반쯤 “보존”에 대한 개념정의를 생태에 대한 다른 차원의 관점과 함께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성장의 한계”라는 연구진들의 모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²³⁾ Edward Goldsmith는 환경문제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제도가 일시적이고 우연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한정된 자원을 생각

20) 19세기 유럽에서 시작한 환경보전운동의 야행동물보호정책은 사냥꾼들의 이익에 부합할 뿐이었고 후에 20세기에 미국에서 결집된 인간중심주의적 환경보존주의 운동은 핵심적 모토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증진하는데 있어 과학에 근거한 이성적인 계획이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이용권이라고 표현되며 이는 자원개발과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주요한 주제였고 이를 위한 과학적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See at F. T. Wildes, “Recent Themes in Conservation Philosophy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Vol. 22 No. 2, 1995, p. 143.

21) G. Pinchot, “Conservation”, in D. Wall, *Green History: A Reader in Environmental Literature, Philosophy and Politics*, Routledge, 1994, p. 136.

22) *ibid.*, p. 136.

23) D. H. Mea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 Potomac Association Books, 1972, pp. 45-46. 이 연구진은 세계의 경제적 성장 및 인구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필요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생리적 및 산업적인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물리적 필수품인 음식, 원자재, 화석, 핵원료, 기본적인 화학물질의 재사용과 쓰레기를 흡수하는 생태학적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필수품으로 평화, 안전교육, 고용 그리고 꾸준한 기술적 성장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바로 닫힌 지구의 시스템은 제한되지 않은 성장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오염에 관한 정책은 생태학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없이 다루어 기울고 있는 우주선과 같은 지구가 위험한 경고사인을 보내는 것이라 지적하며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²⁴⁾ 첫째, 자연의 생태학적 과정을 파괴하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 자원관리와 사회적 회계를 고려한 관점으로 경제적 이론은 다시 재고되어야 하고 셋째, 재생될 수 없는 자원이 분권화를 통한 사회의 급진적인 재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⁵⁾ 이 의견은 작은 정부 혹은 더 작은 사회가 공공정책결정에서 특별히 환경손상에 대하여 싸우는데 더 용이하게 공공참여를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즉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과학에 대한 맹신과 과학으로 인한 개발과 발전이 자본의 부를 가져오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다. 부가 늘면,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 올 것 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기반으로 인류는 자연을 집어삼키는 생산체계를 개발했다고 비판 한다.²⁶⁾ 이 주장은 개발이 오로지 대량생산과 부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수단으로 사용된 개념일 뿐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 생산체계의 근간의 의미를 알아야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편파적인 결과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생산체제와 소비의 패턴이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환경오염 및 자연의 보호는 막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회가 ‘충분한 부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철학적인 고찰만이 즉 이 충분함에 대한 한계가 정해져야 자원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다.²⁷⁾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2002년 현 시대를 인류세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에 관해서 그 후 해결책으로 제시된 환경 인문학, 서식지 문화개념 및 민족생물학 이론이 주장하는 자연관과 자연보존방법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⁸⁾ 인류세 개념은 지구 생태계는 되돌리

24) E. Goldsmith et al, “A Blueprint for Survival”, The Ecologist, Vol. 2 No. 1, p. 5.

25) *ibid.*, pp. 8-17.

26) E.F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Blond Briggs, 1973, p. 11.

27) E.F Schumacher, *op. cit.*, pp. 276-277.

28) 김대영, “인류세 시대의 환경 인문학적 자연보호관리론 게리 나브한의 서식지 문화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제16집 제4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7, pp.45~46.

기 어려운 몇 개의 환경적 임계치를 넘었다고 보고하면서 자연의 자생적 복원력 보다는 자연보호관리론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수용 및 옹호하는 이론들을 발생시켰다. 현대에서 제시되고 있는 환경 인문학, 서식지 문화개념 그리고 민족생물학 이론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인간-자연의 상보적 관계의 글로벌적 인식, 이를 위한 인문학 및 다른 학문과의 학제간 경계를 넘은 협업, 해당 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역 주민의 전통적 및 자생적 자연보호관리의 개입 필요성, 이러한 지역 원주민의 전통적 자연관리 방법과 조화로운 경제적 수입창출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시 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소위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자연환경보전의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자연의 심미성을 강조한 결과 인간 혐오주의를 낳았고 오히려 인류세의 문제를 증가시켰다고 비판하며 그 한계를 극복한 담론들이다.²⁹⁾ 즉 미국의 생태비평에서 야생지 개념의 생태중심적 자연관은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원시자연으로 백인들이 정착하기 이전의 시대를 잘못 상정했고 이러한 자연관은 미국 원주민의 지역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통적인 농업적 관리 및 개입을 무시한 관념으로 오히려 더 지역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일조한다고 분석되었던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철학은 이렇게 인류세 시대에 제시된 환경인문학, 서식지 문화개념 그리고 민족생물학에서 제시하는 인간과 자연의 상보적 관계, 지역 토착민들의 전통적 자연관리 개입방식 그리고 이에 기반한 수익적 경제활동의 가치들과 동일선상에 있다.

3. 소결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관습법들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철학적 개념에 관한 고찰에서 ‘철학적’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는 국제관습법의 원칙들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한다는 것이고 그 필요성을 전제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철학적 사유라는 것은

29) 김대영, 전제논문, p.36.

“무엇이 이익 되는가”를 거슬러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것이다.³⁰⁾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삶의 바른 의미를 찾아내는 철학함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념, 사상, 이념, 상식, 관행, 관습, 선입견, 편견, 독단, 아집 등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³¹⁾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비교적 오류로부터 우리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호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변화안에서 철학적 사고와 사유의 부재는 “사회는 화석화되고 신념은 경직된 독단으로 변해 버리게 되며 상상력은 메말라 비틀어지고 지성은 볼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³²⁾ 즉 철학함이란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이며, 어떤 세계가 바람직한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그래하는지”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³⁾ 하지만 결국 그 사유의 종착점은 무엇이 옳은가 혹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이익을 추구하는 삶과 대치되지 않는 삶을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성찰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철학적 사고라 명명될 수 있다고 한다.³⁴⁾ 철학적 사유라는 것은 좋은 삶과 좋은 세상에 관한 이론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이 균형점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자적 차원의 개발개념이 추구하는 삶의 향상과 충분한 부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고찰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구하는 ‘충분한 부의 기준’에 대한 소통과 합의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철학적 사유는 우리의 욕구충족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기준과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한다.

30) 김광수, “철학, 우리에게 무엇인가?”, 「철학연구」 제54집, 철학연구회, 2001, 6면.

31) 김광수, 전제논문, 7면.

32) 이명현 외 역, 「현대철학의 쟁점들은 무엇인가?」, 심설당, 15면.

33) 김광수, 전제서, 8면.

34) 김광수, 전제논문, 6면.

따라서 균형은 각각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사회의 합의점을 찾는 데서 부터 실질적인 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도모하기 위한 세대내 형평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마련이 기본적인 첫 출발이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추구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나에게도 진정한 선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철학적 사유는 바로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련된 균형점 및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함께 명명되면서 내포하고 있는 기저 철학적 가치라고 분석될 수 있다.

게다가 현 시대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환경인문학, 서식지 문화개념과 민족생물학 같은 이론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들의 핵심은 바로 전 지구적 위기들의 글로벌적 논의에 지역적 관점을 제시하는 글로벌의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다양한 학제간의 경계를 허물 뿐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지식간의 경계도 허물어 인류세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각 지역적 상황에 맞는 자연보호관리론의 제시이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학제간 협력을 통해서 자연의 무형적 가치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구현하여 자연과 인간의 상보적 관계를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특별히 서식지 문화개념은 지역사회의 원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한 상보적 관계 기반의 경제적 이익의 창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그 핵심적 주장이다. 이러한 철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철학과 같은 맥락이며 인류세에 제시되는 이러한 환경보호이론들도 결국 학제간의 경계를 부수는 다양한 협력과 소통, 지역사람들의 전통적 생태계의 이해와 존중, 이러한 것들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협치 그리고 합의점을 위한 상식적인 절차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지를 살피기 위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치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Ⅲ.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의 운영실태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1.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의 체계와 운영실태

가. 입법체계

2007년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³⁵⁾ 이 법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³⁶⁾ 당시 산림기본법 등 34개의 법들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합의된 정의 및 개념이 없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었다.³⁷⁾ 전반적으로 동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현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할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2010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고 총 22개의 조문 중 제3조³⁸⁾, 제4조³⁹⁾, 제5조⁴⁰⁾, 제6조⁴¹⁾, 제8

35)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부칙에 의해서 법률 제8621호로 2007년 8월 3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08년 2월 4일에 발효되었다.

36) 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244면.

37) 장인호, 전제논문, 244면.

38)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

조⁴²⁾, 제9조의 제3항과 제4항, 제12조가 삭제됐다.⁴³⁾ 즉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편입시켰으므로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조항은 삭제 됐다.⁴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법 상

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 39)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40) 제5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1)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42) 제8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43) 방동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 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307-402면 참조.

위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기후변화대응과 또한 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대책을 마련한 법이다.⁴⁵⁾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본법인 현행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큰 두 개의 기둥에 기반하여 여러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들이 존재한다.

본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⁴⁶⁾ 사업은 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규율을 받는다. 에너지와 관련한 법들도 큰 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이행하는 법들로 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이 존재한다. 이 법들은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함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고령화와 저출산,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다.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 과학자들의 의견이다.⁴⁷⁾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이 깊어지고 경제전망은 밝지 않아도 세계에너지 수요는 점점 증가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사상 최고치가 되었다고 보고된다.⁴⁸⁾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환경위기에 더하여 가뭄, 홍수, 폭염 등 원인으로 경제적 손실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⁴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은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구조의 기본적인 체질을 변경하여 에너지 저비용 경제의 사회구조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⁵⁰⁾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한 지역에 평준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햇빛, 바람, 물, 바이오 가스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청

44) 방동희, 전제논문, 307-402면.

45) 기획홍보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The Hope Report 13호, 2013, 4면.

46) 지속가능한 에너지 와 재생가능에너지는 실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와 동일한 용어라고 정의된다.; 김재경, “에너지·자원의 관리체계”, 한국법제연구원, 1998, 30면.

47) 산업자원부, “풍력발전단지 지역수용성 제고방안”, 2006, 2면.

48) 정명운,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7면.

49) 유광흠, “녹색건축조서 활성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0, 3면.

50) 이종영, “독일의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4, 237면

정에너지인 것이다.⁵¹⁾ 이 기술은 에너지 자원의 소멸에 대한 대책과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에너지 흐름은 석유에서 천연가스를 거쳐 이제는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⁵²⁾ 이것은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축한 정책이다. 따라서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3/1 증가한다는 전망과 함께 OECD 회원국들은 이미 석유와 석탄중심 운영에서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한다.⁵³⁾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 및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⁵⁴⁾

나. 운영실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들의 발효 후 신재생에너지의 상품시장으로 진출 및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용·보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대체에너지의 범위를 정하고 기술개발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제정하였지만 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의무화 시키고 법에 이를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 산업을 증진시키며 특히 공급인증서의 운영의 거래에 기반한 시장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이다.⁵⁵⁾ 비슷하게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확산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다.⁵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화, 발전사업자들의 발전량에 관한 신재생

51) 산업자원부, 전개책, 10면.

52)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2, 47면.

53) 국제에너지기구(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11면.

54) 정명운, “녹색도시 건축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31면.

55) 손정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입법정책 연구” 가천대 박사학위논문, 2013, 20면.

56) 손정수, 전개논문, 20면

에너지의 일정량의 이용 및 공급의 의무화를 명시하였다.⁵⁷⁾ 2002년에는 특별히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2년에 이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⁵⁸⁾ 또한 이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정책심의회 심의 후 이에 관한 10년 이상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⁹⁾

2. 문제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의 문제점은 「지속가능한 기본법」과 「저탄소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도 영향을 미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동질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법」의 문제점은 바로 삭제되어 「저탄소녹색성장법」으로 이전된 조항들이다. 삭제된 내용 중 제3조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원칙을 정립한 조항으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리오선언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4조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에 관한 조항이고, 제6조는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책임과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규정이고 제12조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에 관한 것이다.

심각하게 조명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조항들이 「지속가능한발전 기본법」에서 삭제되어 발생하는 핵심적 문제는 바로 ‘지속가능성’이 다양한 분야의 통합을 의미하는 반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저탄소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보다도 좁은 개념으로 성장과 개발에만 주로 치중한 협소한 개념이라는 데서 발생한다.⁶⁰⁾ 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 경제, 문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57) 손정수, 전제논문, 23면.

58) 정경록,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법제의 대응”, 법제처, 월간법제, 2010, 7면.

5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제1항 및 제2항.

통합적인 관점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기본법에 서 규율하는 기본법제들을 삭제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흡수하는 것으로 대치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⁶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법체계안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대립되고 있는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화시키기가 어려워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법률들을 매년 개정하는데 합의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확보의 마련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이라는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개념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간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검토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소통과 토론을 위한 절차적 근거를 가진 기본법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미비점은 상식적인 소통의 시도도 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심각한 결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민들의 인식확산과 참여, 공감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민관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의 학습과 토론의 장 등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실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기본법의 복원이 중요하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의 문제점은 「지속가능한 기본법」과 「저탄소기본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동질의 취약점을 지닌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대내 형평을 위한 세대내 주체간 대화와 소통을 위한 절차적 부재, 이와 연계되는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를 규제하는 법규의 미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이 종국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되어 널리 보급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 있게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도양에 관한 법조항의 부재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음 단락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해 모범적으로 법조항을 구성한 국제경제지역협약들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더 분석하고자 한다.

60) 윤경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다시보기-비판적 평가와 전망-”,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12, 44-49면.

61) 장인호, 전개논문, 247면.

Ⅳ.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1. 국제경제지역협약상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규정

EU와 미국이 「범 대서양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정」(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의 체결 시 한편에서는 TTIP에 「관세에 관한 다자간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존재하는 에너지 관련 내용의 준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TTIP규정에 별도의 에너지 조항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⁶²⁾ 하지만 EU의 세 번째 에너지 패키지에 관한 지침⁶³⁾ 및 WTO 캐나다 재생에너지 사건⁶⁴⁾에서 알 수 있듯이 GATT와 「서비스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는 애당초 에너지를 위해서 제정된 협정이 아니었다. 결국, TTIP협정에 소재원료와 에너지 자원분야에 관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위한 규칙과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⁶⁵⁾ 즉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류에게 에너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⁶⁶⁾ 정부들은 증가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에 관해서도 바람직한 제재를 위해서 녹색성장과 재생에너지의 강조, 에너지 자원 및 소재원료 공급의 안전한 확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현 WTO법과 국제투자법들은 이런 원료소재와 에너지에 관해서 완벽히

62) Rafael Leal-Arcas, “Mega-Region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Review*, vol. 4, 2015, p. 253.

63) *ibid.*, p. 253.

64) Appellate Body Report, *Canada—Measures Relating to the Feed-in Tariff Program*, WT/DS426/AB/R; Appellate Body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ion*, WT/DS412/AB/R.

65) ‘Final Report: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1, United States–European Union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2013, p. 6.

66) Rafael Leal-Arcas, and Fills, A., “Conceptualizing EU Energy Security through an EU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6 No. 5, 2013, pp. 1225–1301.

다루고 있지 않다.⁶⁷⁾ 사실상 WTO법규는 수입장벽에 관해서는 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장벽에 관해서는 약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에너지에 관한 국제무역이 이뤄지는데 있어서 복잡한 요소가 된다.⁶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는 에너지 서비스에 관한 개념정의도 없고, 에너지 상품에 관한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규칙도 없다. 마지막으로 무역독점 과 분배독점의 문제이다. 이것은 무역 또는 향유를 위한 라이선스에 있어서 투명성의 결핍의 문제이다.⁶⁹⁾ 이것은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라이선스 방식과 지역 콘텐츠 조건들 기준으로 배포 및 향유되는 과정에서의 비 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미비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TTIP는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에너지 무역자유화의 모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EU는 미국과 TTIP를 체결하면 기대하는 예상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기 했다. 첫째,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의 수출증가 및 지역 에너지 전략에 크게 유익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 둘째, LNG에 관한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정이 EU의 러시아 가스에 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의 소재원료의 구매가능한 나라의 목록을 다양화시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당국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모든 LNG의 수출에 관해서 승인방식으로 관리한다.⁷⁰⁾ 하지만 미국이 지역 간 경제협정을 맺은 국가에 관해서는 LNG가 엄격한 승인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이렇게 국경내 장벽으로 간주되는 복잡한 승인절차의 생략이 지역적 경제협정이 가져다주는 혜택이다. 동시에 미국의 무역구조에 수정 및 변화가 거의 필요 없기

67) European Commission, "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l EU Position Paper, 2013, p. 1.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nergy/sites/ener/files/documents/tradoc_151624.pdf, Accessed October 30, 2019.

68) *ibid*, p. 1.

69) European Commissi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sition Paper: '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Raw Materials and Energy'", Initial EU Position Paper, 2013, p.1. Available at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3/july/tradoc_151624.pdf. Accessed October 30, 2019.

70) Rafeal Leal-Arcas, *op. cit.*, p. 254

때문에 유익하다고 평가된다. TTIP협정으로 미국과 EU사이에 에너지 상품 및 에너지 소재 자원이 좀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수출관련 장벽들을 제거 및 삭제하는 것이다. 특별히 양국의 에너지에 관한 TTIP의 핵심사항은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의 촉진’이었다. 이 둘의 기술과 이 기술에 관한 상품기준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형태인 녹색기술, 녹색상품 그리고 녹색서비스 무역과도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기 때문이었다.⁷¹⁾

또한 EU-Korea FTA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되었다고 한다.⁷²⁾ 이는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 개의 기둥인 환경보호, 경제개발, 사회적 개발 중 하나이다.⁷³⁾ 즉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사업과 운영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한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이익을 만드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U-Korea FTA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한 구조와 계획에 관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⁷⁴⁾ 이를 위해서 녹색상품,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상품과 서비스, 친환경표시가 된 상품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제협약들 중 TTIP협정에 제시된 개선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APEC의 환경적 상품목록에 TTIP 목록을 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⁷⁵⁾ 이러한 의견은 APEC 환경적 상품목록은 환경적으로 더 책임감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삭감되는 상품의 목록을 수집한 것인데 이를 TTIP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즉 솔라 패널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로 이 상품들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관세가 삼각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목록이 포함하는 기술에는 오염조율과 환경보호 모니터링 기술로 만들어진 상품들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71) Leal -Arcas, R. and Fillis, A. “Certain legal aspects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n Lim, C.L. and Mercurio, B.(eds), International Economic Law after the Global Crisis: A Tale of Fragmented Discipli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482-518.

72) EU-Korea FTA, Art.13.6.2.

73) ‘2005 World Summit Outcom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5 October 2005, para 48.

74) *ibid.*

75) Rafeal Leal-Arcas, *op. cit.*, p. 254.

이 의견은 APEC 목록을 참고해서 다른 녹색기술들과 재생에너지의 목록에 관하여도 국경 상 혹은 국경 외 장벽이 되는 관세의 삭감과 관세면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률용어의 삽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목록의 지정은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켜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크게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무역독점과 분배독점의 문제인 라이선스 과정의 투명성의 결핍의 문제에 관해서 EU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경제협약들에 추출산업투명성협정(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러한 국제경제협력에도 포함하는 것을 주장했다.⁷⁶⁾ EITI는 오일, 가스, 미네랄 소스를 위한 국제투명성기준으로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감시하는 절차이다.⁷⁷⁾ EU가 EITI의 주요한 요소들을 TTIP에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가장 큰 이유는 EITI의 준수가 미국과 EU의 국내입법의 준수상황을 반영해주기 때문이다.⁷⁸⁾ 이것은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라이선스 방식과 지역 콘텐츠 조건들 기준으로 배포 및 향유되는 과정에서의 비 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미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21세기 핵심기술인 ‘재생에너지’에 관한 모범적인 국제지역경제협력들의 기반정책, 전략적인 협약과 조항의 구성에 관한 분석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2. 법적 개선방안

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의 상위 기본법 체계에 관한 개선점

76) European Commissi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sition Paper” op. cit., p. 2.

77) “What is the EITI?”(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http://eiti.org/eiti>.

78) Rafeal Leal-Arcas, op. cit., p. 25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주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EU의 경우 EU Treaty of Lisbon협약⁷⁹⁾, 다른 다자적 및 양자적 개발협약 등에 명확하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규정해 왔고, 2001년 이후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실현은 EU정책의 일부가 되어 왔다.⁸⁰⁾ 즉 EU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사용, 생태학적·사회적 혁신의 현실화 등 다양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EU가 전 지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이다.⁸¹⁾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이행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토양은 전 방위적인 ‘고립’을 막고 소통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철학적 가치 및 개념분석에서도 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균형을 고려하며 사회의 합의점을 찾는 데서 부터 실질적인 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정부로 변모한다는 것은 해당이행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논의에서 부터 시작하는 유연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도입한다는 변화를 갖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마련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문명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발판이다.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친구의 법’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었다.⁸²⁾ 즉 강력한 법이 아닌 다른 법률, 계획 및 행위주체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이 법의 최고 상위의 기본법으로의 복원은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토양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 방위적으로 발생할 가치충돌의 문제를 조화로운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과 소통절차의 마련으로 사회적 혼란과 충돌로 인한 손실과 분쟁을 방지하여 한국사회의 모든

79)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OJ C306/1, 2007, paras 4.24.

80) Lorand Bartels,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ligations in EU Free Trade Agreements”,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No. 4, 2013, p. 306.

81) European Commissi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sition Paper” op. cit., p. 21.

82) 희망제작소,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The Hope Report」 제13호, 2013, p. 2. <https://www.makehope.org/category/research/hope-reports/page/5/>.

부분에 걸쳐서 모든 것이 ‘지속가능성’을 갖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최상위 기본법으로의 복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이행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토양을 마련하는 것임으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 추출산업투명성 협약(EITI)의 가입추진 및 주요원칙과 내용의 포함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무역독점과 분배독점의 문제인 라이선스 과정의 투명성의 결핍의 문제에 관해서 EU는 추출산업투명성협정(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러한 국제경제협력에도 포함하는 것을 주장했다. EITI에 참여하는 국가는 두 단계가 있는데, EITI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한 국가들과 EITI후보자 나라로 EITI 규칙을 이행하고 있지만 모든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국가이다.⁸³⁾ EU는 EITI가 TTIP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원국들의 서약이 없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었던 만큼⁸⁴⁾ 우선 한국정부도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ITI는 중요한 12개의 원칙을 제시한다.⁸⁵⁾ 이러한 투명성에 관한 원칙들이

83) ‘EITI Countries’ 참조 <http://eiti.org/eiti>.

84) Rafeal Leal-Arcas, op. cit., p. 254.

85) “첫째 우리는 자연적 자원의 신중한 사용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적절하게 관리되어지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끼친다는 신념을 나눈다. 둘째,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자연자원의 관리는 자국의 개발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행사되는 주권국가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자원추출의 혜택은 수년간의 수입의 매출원이 되고 매우 높게 가격 의존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수입과 지출에 관한 대중의 의견은 공공논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알맞고 현실적 조건들에 관한 선택을 알려준다고 인정한다. 다섯째, 추출산업에서 정부와 회사에 의한 투명성의 중요성과 공공 자금 관리와 공공책임을 증진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섯째, 더 큰 투명성의 성취 및 목적들이 계약서와 법규들을 존중하는 매너와 형태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곱째, 우리는 자금의 투명성을 달성할 국내 및 해외 직접투자를 위한 향상된 환경을 조력한다. 여덟째, 정부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실행과 원칙이 공공지출과 수입 매출원의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아홉째, 투명성과 책임감의 높은 기준을 사업, 정부운영 공공생활에서 고양하기를 노력한다. 열 번째,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폭넓게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접근으로 지출과 수입의 공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이행하고 사

신·재생에너지 법에도 추가되면 이미 국제경제법상 재생에너지의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재생에너지 관련 라이선스 배급에 있어서 독과점 및 불공성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원칙 이외에도 EITI 협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 회사, 시민 사회 여기에 더 추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명시한다.⁸⁶⁾ 따라서 EITI의 이행에 관해서 정부는 시민사회 이외에도 관련 그룹들에게 참여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전제된다. 이 밖에도 EITI는 모든 에너지 관련 계약서와 라이선스 공급과 이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다. 첫째 라이선스를 이전 및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상세서, 그리고 사용된 라이선스의 기준, 제공된 라이선스를 받는 자들에 관한 정보, 라이선스 제공 및 이전을 규율하는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기본규칙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예외들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계약의 체결과 라이선스의 제공에 관해서 여러 개의 다른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결정하는 규칙의 설명 및 왜 그 특정한 절차가 선택되고 사용된 기준이 되는 규칙에 관한 설명을 그 라이선스의 이전 및 제공하는 절차의 상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한다⁸⁷⁾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에서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절차 및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및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상품에 관해서 라이선스 보급 및 이용에 관한 배포독점을 막기 위해서 EITI 협약상 투명한 절차에 관한 조항의 개별적 삽입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에 관한 EITI협약의 참조와 적용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EITI의 협약에 가입하

용하기 쉬워야 한다고 믿는다. 열한 번째, 지출의 공개에는 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추출산업회사가 참여해야 한다. 열두 번째,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뤄야 하는 중요하고 관련 된 기여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정부와 그들의 하부기관, 추출산업회사, 서비스 회사, 다자기구, 금융 기구, 투자자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있다”.The EITI STANDARD, 2019, p. 8. 참조 <http://eiti.org/eiti>.

86) *ibid.*, p. 11.

87) *ibid.*, p. 17.

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도약이 될 수 있다.

V. 결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실현은 21세기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향점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해결해야 하는 당면의 과제이다.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다양한 분야의 균형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절차적 법적근거를 명시한 기본최상위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법」의 복원은 첫 번째 과제이다. 이의 여파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현가능성 파악, 구체적인 도움과 실천적 협업이 필수임에도 각각의 지역사회 시민들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실천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한 절차적 근거법이 최상위 기본법으로 없다는 것은 중요한 하자이다.

둘째, 국제지역경제협약상 이미 문제점이 부각된 신·재생에너지의 이행에 관한 무역, 분배 및 라이선스 배포상 발생하는 독점문제를 위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에도 EITI협약의 주요한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재생에너지의 승인 및 분배 라이선스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신뢰의 운영이 가능하게 기본적인 법적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은 우리 사회가 자연속의 동물, 생태계 그리고 자원에 대한 생각이 기존의 사고방식과 개념에서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관해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실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점 및 공감지점을 찾아 나눌 수 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아래 재생에너지 사용을 보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적 마련은 다양하고 다른 의견에 토론과 이해를 통한 차이점을 나눌 수 있는 일상화되고 상식적인 절차적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기도 하다.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사용의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는 세계화 안에서 한류열풍이라는 기적과 함께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에 찾아오고 난민, 이주민, 다문화가정들의 증가라는 다양한 구성원들로의 변화 속에서 세계시민의 정신이라 볼 수 있는 초문화화의 사고 및 자세가 필요한 21세기의 시민들을 키워내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초석이 되기도 한다고 전망한다.

참고문헌

- 김대영, “인류세 시대의 환경 인문학적 자연보호관리론 게리 나브한의 서식지 문화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제16집 제4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7.
- 김광수, “철학, 우리에게 무엇인가?”, 『철학연구』 제 54집, 철학연구회, 2001.
- 장인호, “헌법상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경록,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법제의 대응”, 법제처, 월간법제, 2010.
- 정명운,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정경록,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법제의 대응”, 법제처, 월간법제, 2010.
- 손정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입법정책 연구” 가천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산업자원부, “풍력발전단지 지역수용성 제고방안”, 2006.
- 윤경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다시보기-비판적 평가와 전망”,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12.
- 유광흡, “녹색건축조서 활성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종영, “독일의 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4.
-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제정에 관한 법적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 최윤철,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환경권의 의미”,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희망제작소,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The Hope Report」 제13호, 2013.

Rajendra Ramilogan, *Legal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 Judicial Interpret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Leal-Arcas, R.,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plementing or Supplanting Multilateralism?”,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1 No.2., 2011

J. O’Neill, *Ecology, Policy and Politics: Human Well-Being and the Natural World*, Routledge, 1993.

M. Jacobs, *The Green Econom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London: Pluto Press, 1991.

Sergio Tazanos Vazquez & Andy Sumer, “Revisiting the Meaning of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Tax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49 No. 12, 2013.

F. T. Wildes, “Recent Themes in Conservation Philosophy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Vol. 22 No. 2, 1995.

Appellate Body Report, *Canada–Measures Relating to the Feed-in Tariff Program*, WT/DS426/AB/R.

Appellate Body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ion*, WT/DS412/AB/R.

‘Final Report: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1, United States–European Union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2013.

Rafeal Leal-Arcas, and Fills, A. “Conceptualizing EU Energy Security through an EU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6 No. 5, 2013.

- Leal –Arcas, R. and Fillis, A. “Certain legal aspects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n Lim, C.L. and Mercurio, B,(eds), *International Economic Law after the Gblal Crisis: A Tale of Fragmented Discipli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Lorand Bartels,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ligations in EU a Free Trade Agreements”,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No. 4, 2013.
- European Commissi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sition Paper: '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Raw Materials and Energy’”, Initial EU Position Paper, 2013, Available at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3/july/tradoc_151624.pdf.
- European Commission, “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l EU Position Paper, 2013. Available at https://ec.europa.eu/energy/sites/ener/files/documents/tradoc_151624.pdf.

[Abstract]

A Study on Legal Improvements on Related Laws of Renewable Energy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hang, Jin-Sook

Senior Researcher at Glocal Science Technology Law Research,

Visiting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imed at offering legal improvements for the related laws with renewable energy that is one of the essential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nalysis is to evaluate whether these laws are well designed toward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this article firstly analyzes the concept and philosoph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three important domestic laws that are in a close connection with renewable energy are briefly studied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philosophy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st specially among these three law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aw to Improve The Use·Development·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large part. Lastly,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agreements are compared for their included artic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And two legal suggestions are introduced for 「The Law to Improve The Use·Development·Supply of Renewable Energy」 after analyzing the concept and philosophical val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clauses contained in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One is to re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already recommended suggestion that is about restoring a fundamental legal foundation to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ally. The other is a newly recommended suggestion gained from the analysis on the claus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on international regional economic agreements. It is to include th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Transparency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o the Renewable Energy Law.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Transparency, 「Transparency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e and Sustainable Article of EU-Korea FTA, 「The Promotion Law of Development·Use·Transfer of New·Renewable Energy」.